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근로강요행위 적발시 양식업
면허·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095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양식업 면허 및 허가 취소 사유에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근로강요행위 추가	2
2.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 환수	8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1.

3. 회 부 일 : 2025.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없이는 사실상 양식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제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양식업 면허 및 허가 취소 사유에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양식업 면허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27조제1항제7호, 제36조제1항, 제51조제5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면허권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 ----제27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호--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면허의 취소)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27조(면허의 취소) ① ----- -----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신설>

② (생략)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① 제21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
호까지 또는 제6호(제26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
당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업권의 저당권자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는 제2
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
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권
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7.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
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
이 적발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① -----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6
호까지(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는 제7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허가의 취소)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u>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u>
-----------------------------------	--

나. 검토의견

- 2024년 기준 양식업계의 종사자 수는 5,306명이고, 경영주는 소규모 경영체의 휴·폐업으로 2020년 대비 9.04%(△139명) 줄어 감소 추세이나, 실질적인 양식업종사자인 상용종사자의 수는 2020년 대비 9.8% 증가(+283명)하는 추세로서, 2024년도 어류양식동향조사¹⁾에 따르면 이는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기인함.

< 양식업 종사자 현황(2020년 ~ 2024년) >

연도	종사자합계 (A+B+C)	경영주(A)	무급가족종사자(B)	상용종사자(C)
2020	5,068	1,537	636	2,895
2021	4,805	1,483	617	2,705
2022	5,005	1,419	664	2,922
2023	5,292	1,415	736	3,141
2024	5,306	1,398	730	3,178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통계청)

비고 : **경영주**-양식장을 책임지며 직접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경영주의 가족으로서 임금을 받지않고 정규시간 이내로 종사하는자, **상용종사자**-양식장에 고용되어 일정한 임금을 받는 종사자

1) 통계청, 2025. 3. 21. 배포

□ 국내 염전 업체에서 발생한 강제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미국이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²⁾를 내리는 등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일부 양식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및 부당한 대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³⁾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양식업계에 대해 근로자들의 근로 강요 근절을 통한 권익 보호와 양식업자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현행 양식업자의 근로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양식산업발전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107조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뿐만 아니라 양식업 면허 및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양식업자의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고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2)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2025.4.3.), “○○염전의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수입보류 명령을 내린다”고 밝힘(출처 : MBC뉴스, 한국경제 언론보도 등)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5.21.), 여수·고흥 지역 외국인고용 가두리양식장 일제 감독 결과, 부적정 숙소 제공, 임금체불 등 28건 적발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107개소)을 대상으로 '24.3.25.~4.30. 일제 감독을 실시

-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백만원)을 임금 정지지급일에 미지급 등)

4)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사입법례로 「소금산업 진흥법」⁵⁾(2015. 2. 3. 시행)에서도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취소 사유로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양식업 면허 및 취소 사유 >

양식업 면허 취소 사유 (법 제27조제1항 제1호~제6호)	양식업 허가 취소 사유 (법 제51조 제1호~제4호)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② 면허의 결격사유(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양식업권자의 휴업 신고 규정(법 제22조)을 위반한 경우 ④ 양식업권자가 타인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법 제23조) ⑤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규정(법 제32조)을 위반한 경우 ⑥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규정(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양식업 개시시기 규정(양식업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개시, 제21조) 및 양식업권자의 휴업 신고 규정(법 제22조)을 위반한 경우 ③ 양식업권자가 타인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법 제23조) ④ 허가의 제한 또는 정지 규정(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 노동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산분야도 선제적으로 제도를

5)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편, 유사입법례인 「소금산업 진흥법」의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허가 취소 및 자금 회수 사례는 법률 개정 이후 그 사례가 없다⁶⁾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하위 법령에서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2.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 환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7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①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양식업자의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고 양식업 질서 확립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양식분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제 근로가 적발된 경우 기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수가 시행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상세한 규정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임.

□ 양식업 관련 주요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20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총 4,330억원임.

< 2025년 양식업 관련 주요 지원사업 >

회 계	세부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농특	수산물관측	▪ 주요 수산물의 생산·가격 및 수출입 등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출하조절, 수급안정화를 통한 적정가격 유지	5,241
농특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 (실태조사) 양식장의 지속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양식업권 관리 실태조사 ▪ (통합관리시스템) 양식업 면허정보, 관리실태, 재해현황 등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면허심사·평가제)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제를 위한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 위탁 ▪ (양식어장 환경조사)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어장환경관리시스템 등 운영	6,379
수발	수산물 자조금지원	▪ 양식수산물 품목별 대표단체가 소비활성화, 수급조절 등을 위해 자조금 조성하면 보조금 지원	4,389
농특	양식등 재해대책비	▪ (재난지원금) 어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 (적조구제) 양식시설에 대한 적조 대응장비, 구제물질 지원 및 사전대응 연구 ▪ (이상수온 대응)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장치, 면역증강제,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 (어항 피해복구)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국가·지방어항 시설물 복구비용	25,000
농특	양식장임대	▪ (양식장임대) 귀어인에게 공공양식장을 임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 등 지원 ▪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스마트·자동화된 임대형 스마트 양식장 구축	5,832
에특	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보급 ▪ (양식장소수력발전) 양식장 배출수 활용 소수력발전설비 지원 ▪ (수산가공 에너지절감) 김 등 에너지 다소비 가공분야 에너지 절감장비보급 ▪ (저탄소양식산업 기반) 양식분야 저탄소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21,879
농특	수산물 질병관리	▪ (수산물병관리 및 생산어가 지원) 방역사업 수산동물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 유지보수, 수산물병관리사 국가시험 수산물진료업 종사자 교육, 생계안정자금 및 살처분 지원 등 ▪ (기생충·축구제) 유해생물 기생충·축 구제비용 지원	7,707

회 계	세부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잔류조사, 수산용의약품 관리·감시, 양식생물의약품사용실태 조사 ▪(방역대응지원) 국내 및 해외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지원 ▪(인프라보강 및 운영) 방역 연구장비 보강, 시설유지관리, 연구지원	
농특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사료 안전성) 법정 검정업무 수행 및 사료 품질안전 관리를 위한 사료 등 구입비 ▪(사료사용 확대 기반) 수산사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 연구비 ▪(국립양식사료연구소 건립) 국립사료연구소 준공을 위한 연차별 공사비 반영 ▪(친환경배합사료공장) 친환경배합사료 공장 준공을 위한 연차별 공사비 반영	8,481
농특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양식창업및시설지원) 양식창업 컨설팅, 지자체 스마트양식연구시설 건립비용,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구축, 친환경·스마트양식시설표준모델 마련 ▪(스마트양식클러스터조성) 충남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비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 스마트양식 생산성 및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품종별산업화시설) 친환경개체굴양식지원,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지원, 스마트가두리시험사업, 파충류자동화설비, 패류공동생산시설, 기후변화대응 신규양식어종 ▪(청정어장재생사업) 청정어장 재생사업 사업비	48,762
농특	수산종자 산업육성	▪(수산식품품종보호제도) 해조류 출원품종 심사 및 기술 개발 수산식품종사유통조사등 ▪(수산종자관측) 주요종자(7종)의 생산량 유통, 해외시장 정보 등 수급동향 정보 분석 ▪(수산종자산업진흥) 우수 종자생산장 통합컨설팅 및 생산정보표시제 지원비 ▪(스마트종자생산시설) 노후 종자생산 설비 교체 및 스마트친환경 시설로의 전환 지원	4,664
농특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	▪(대량생산기술개발) 질병예방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 반영 ▪(양식산업표준체계)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수출지원 및 해외협력)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비용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 노후화된 굴 가공공장 신축 개보수 비용 지원	7,512
농특	관상어산업 육성	▪(연구개발지원) 관상생물 산업화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 ▪(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 2년차 사업비	2,445
농특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자원순환 인프라) 굴껍데기 전처리시설, 유해생물 자원화시설, 폐각친환경 처리 지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수산부산물 정책홍보, 수급관리 체계 구축 연구용역, 통계조사	2,481

회 계	세 부 사 업 명	주 요 사 업 내 용	예 산 (백 만 원)
농특	내수면자원 조성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 체계적인 어도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스템 운영 ▪(내수면기둥리양식어업보상) 내수면기둥리양식어업보상법에 따른 피해어업인 손실보상금	17,117
수발	양식어업지원 (용자)	▪ 고품질 배합사료 공급을 위한 공장 운영비 등 용자 지원	2,240
농특	청년어촌 정착지원	▪(청년어업인정착지원)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자금 지원 ▪(사업운영및평가) 청년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어가소득 등 ▪(청년바다마을조성)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	6,074
지특	어촌소멸 대응지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 사업비, 실태조사 비용 ▪(어촌에서살아보기) 귀어귀촌 희망자 임시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조성 ▪(도시민 기술교육) 도시민이 어촌에 체류하며 기술교육을 받는 귀어학교 교육비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어촌관광홍보) 어촌홍보행사 지원, 포털시스템 운영, 특화콘텐츠 개발 등 지원 ▪(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어업유산 콘텐츠 발굴) 세계중요어업유산 콘텐츠 발굴 지원	6,216
농특	수산물 위생관리	▪(양식장 HACCP)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HACCP 제도 활성화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산물 안전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소통체계 확보 ▪(수산물안전정보관리)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 ▪(쿠도이저감화) 국산 양식납치의 쿠도이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예방등을 위한 전수조사 ▪(수산물 위해요소 관리) 수산물 HLS 도입 대비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지원 ▪(패류 생산해역 모니터링)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바이러스 분석법 개선 등 지원 ▪(국제표준화실험실) 수산물 수출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화 실험실 운영 ▪(패류생산해역 화장실) 패류 생산해역 해양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국제 표준화규격) 국내 수산물 생산·가공 특성이 반영된 국제표준화 규격 개발 ▪(방사능 분석장비)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감시를 위한 분석장비 확충 및 운영비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 국민이 직접 품목 지역을 선택하고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개 ▪(민간기관 활용 방사능 모니터링) 민간기관을 활용한 산지위판장 양식장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24,489
균특	어촌발전 기반조성지원	▪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 지원	385

회 계	세 부 사 업 명	주 요 사 업 내 용	예 산 (백 만 원)
농 특	어촌신활력증진	▪(어촌신활력증진) 어촌신활력증진 계속 신규사업비 ▪(어촌활성화지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선장평가, 설명회, 지문단운영 성과관리 지원 ▪(어촌투자촉진지원) 민간투자자 발굴 및 정보제공, 사업 설계 컨설팅 타당성 평가 지원	225,734

문 의 처

02)6788-5419

참고 1

양식면허, 허가 현황

【일반면허 현황(지자체별)】

(단위 건, ha)

구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기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10,063	162,862	116	1,223	200	1,701	52	368	210	5,895	20	921
해조류	2,228	91,908	86	834	12	136	14	81	4	25	1	20
패 류	5,214	43,538	0	0	107	959	7	54	17	185	4	55
어류 등	1,100	5,380	0	0	53	297	3	12	23	218	5	27
복합양식	1,194	13,267	21	284	26	286	24	138	81	867	10	819
협동양식	317	8,576	9	105	2	23	4	83	82	4,542	0	0
외해양식	10	193	0	0	0	0	0	0	3	58	0	0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733	9,080	386	5,864	5,501	121,725	451	3,209	2,340	11,685	54	1,191
해조류	51	2,617	27	1,606	1,946	86,253	12	28	72	284	3	25
패 류	437	3,885	280	3,227	2,665	26,012	7	21	1,679	9,087	11	52
어류 등	160	1,513	73	674	157	653	105	339	508	1,576	13	71
복합양식	84	1,062	6	357	731	8,782	178	555	24	60	9	56
협동양식	1	3	0	0	2	25	148	2,246	55	643	14	907
외해양식	0	0	0	0	0	0	1	20	2	35	4	80

【일반면허 현황(소유자별)】

(단위 건, ha)

구분	총계		어촌계		수협		개인·협업		영어로조합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10,063	162,862	6,160	126,985	315	12,949	3,436	21,404	152	1,464
해조류	2,228	91,908	1,865	78,794	213	11,793	140	1,076	10	245
패 류	5,214	43,538	2,842	26,805	49	594	2,252	15,687	71	452
어류 등	1,100	5,380	315	1,894	17	79	724	2,926	44	481
복합양식	1,194	13,267	824	10,941	36	483	316	1,637	18	205
협동양식	317	8,576	314	8,551	0	0	0	0	3	26
외해양식	10	193	0	0	0	0	4	78	6	115

【허가현황(지자체별)】

(단위 건, ha)

구분	총계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기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4,853	7,259	34	10	59	33	13	2	85	93	29	32
해상종묘	1,366	5,255	0	0	2	8	0	0	23	89	0	0
육상종묘	1,619	431	2	1	24	4	8	1	32	2	15	1
육상양식	1,868	1,573	32	9	33	21	5	1	30	2	14	31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 계	355	435	82	162	2,771	4,878	95	27	842	1,390	488	196
해상종묘	38	152	0	0	881	3,709	1	5	421	1,292	0	0
육상종묘	140	59	30	23	959	231	23	2	276	56	110	53
육상양식	177	224	52	139	931	938	71	20	145	42	378	143

참고 2

[유사입법례]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근로강요행위 금지

□ 법적 근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제6호, 제49조의2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처벌 현황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 행위 적발에 따른 허가 취소나 자금 회수 사례는 없음